

1. 개정이유

올해 3월,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도입 등의 내용으로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된바,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는 한편, 그 밖의 개정 수요들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소비자 통지의무 구체화(안 제12조의2)

개정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에서 통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계약 체결일, 지급의무자 등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전화·전자우편·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, 통지내용 및 이력을 통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법 제18조제4항”을 “법 제18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8조제5항제2호”를 “법 제18조제6항제2호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법 제22조제3항”을 “법 제2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제2호가목 중 “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등을 제공한”을 “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재화등을 공급하였다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“등기로 발송한”을 “등기 등으로 발송하여 도달한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)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일
2.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사실
3. 지급의무자

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연 1회 이상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휴대전

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2.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내용 및 이력을 통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.

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“3일”을 “7일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“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4항”을 “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“5일”을 “7일”로 하고, 같은 앞쪽 중 “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3항”을 “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 가목 중 “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 등을 제공한”을 “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재화등을 공급하였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신청인 다목 중 “등기로 발송한”을 “등기 등으로 발송하여 도달한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기호(□) 중 “보험 ☐ 채무지급 보증”을 “보험계약 ☐ 채무지급보증계약”으로 하고, 같은 앞쪽 기호(□) 중 “예치 ☐ 공제 계약”을 “예치계약 ☐ 공제계약”으로 하며, 같은 앞쪽 중 “금액-”을 “금액-”으로, 같은 앞쪽 중 “가액)×”를 “가액) ×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·폐업 등의 신고) <u>법 제18조제4항</u> 및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·폐업·영업재개신고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6조(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·폐업 등의 신고) <u>법 제18조제5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7조(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) <u>법 제18조제5항제2호</u> 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	제7조(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) <u>법 제18조제6항제2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) ① (생략) ② <u>법 제22조제3항</u>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불식 할	제8조(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법 제22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를 시
·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1조(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
및 예치금의 지급 등) ①·②
(생략)

③ 법 제27조제12항에 따른 “총
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
수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
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구
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

1. (생략)

2. 선수금이 감소된 경우: 다음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서류

가.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
화등을 제공한 사실을 증
명할 수 있는 서류

나. (생략)

다.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
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
경우 소비자에 대하여 법
제26조 후단에 따라 이행
최고료 등기로 발송한 내
용 및 소비자에 대한 해약
환급금의 송금내용. 다만,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
및 예치금의 지급 등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재
화등을 공급하였다는 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

----- 등기 등으로 발송하
여 도달한 -----
-----.

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
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
약환급금의 산정방법을 문
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----.

제12조의2(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) ① 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일
2.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사실

3. 지급의무자

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연 1 회 이상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2.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내용 및 이력을 통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

	<u>자의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 정할 수 있다.</u>
--	---